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

일시 2023. 10. 4. ^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KICJ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



CONTENTS

세부일정

개회사

- 박대출 국회의원(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6
- 하태훈 원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8

인사말

- 김도읍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9
- 정점식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10

발표

- 이상동기범죄 특성 및 대응방안 11
윤정숙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토론

1. 이상동기범죄 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 방안 23
이정아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
2. 이상동기 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경기남부 특별치안활동」 추진 내용 및 향후 방안 31
김용종 자치경찰부장(경기남부경찰청 경무관)
3. 토론문 37
전명숙 정신건강정책과장(보건복지부)
4. 무차별 범죄 억제를 위한 제언 41
이웅혁 교수(건국대학교 경찰학과)
5. 이상동기 범죄를 둘러싼 보도와 앞으로의 방향 45
배석준 편집국장(법률신문)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

일시: 2023. 10. 4.(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



세부일정

사회: KICJ 대외협력실

시간	구분	주요내용
10:00-10:02	개회	개회 선언
10:02-10:05	소개	참석자 소개
10:05-10:20	개회사	박대출 국회의원(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하태훈 원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인사말	김도읍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점식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좌장	김지선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0:20-10:40	발표	윤정숙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0:40-11:10	토론	이정아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 김용종 자치경찰부장(경기남부경찰청 경무관) 전명숙 정신건강정책과장(보건복지부) 이웅혁 교수(건국대학교 경찰학과) 배석준 편집국장(법률신문)
11:10-11:40		종합토론
11:40		폐회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대출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최근 증가하는 ‘이상동기 범죄’ 현상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주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 좌장을 맡아주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지선 선임연구위원님과 발제해주시는 윤정숙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해주실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님과 김용중 경기남부경찰청 자치경찰부장님, 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 배석준 법률신문 편집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림역 사건, 서현역 사건 등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우리 사회를 짓눌렀고,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 사건 이후 인터넷쇼핑몰 검색순위 1위가 호신용품이었다는 점은 얼마나 국민적 공포와 불안이 컸는지 짐작 가능하게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치안을 자랑하고 여성들도 안심하고 밤거리를 다닐 수 있다는 우리나라의 ‘안전 신화’가 무너지는 게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 모방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모방범죄 예고 글을 작성한 다수가 10~20대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 마음건강, 정신질환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내밀어야 합니다. ‘이상동기 범죄’를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고, 사회의 변화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사회적 현상을 어떻게 명명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는 규정 범위가 협소하고 범죄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상동기 범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향후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부를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 관계당국과 학계, 언론계 전문가가 함께 해주신 만큼, 혜안이 담긴 좋은 말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정책위원회에서 잘 새겨듣고 입법과 정책에 반영해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정부와 여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하태훈입니다.

오늘 긴급토론회 공동주최의 기회를 주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국회 일정에도 긴급토론회를 준비해 주시고 직접 참석하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사말로 토론회를 빛내주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소위 ‘묻지마 범죄’로 잘 알려진 ‘이상 동기 범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사회적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과 증오가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또 생생한 언론 범죄 보도를 통해서 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입법자와 정책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국민의 안전과 공정·정의·공존 사회를 위한 연구를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는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범죄와 사회 현상에 대한 긴급 진단과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한 대응 방안 모색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이상 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상 동기 범죄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상 동기 범죄의 유형과 원인이 다양하고 복잡적이기 때문에 대응 마련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 다양한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의 긴밀한 협력과 깊은 이해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오늘 긴급토론회의 토론자로 여러 분야의 실무전문가를 모신 이유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오신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 연구실장님께서 ‘이상 동기 범죄 특성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내용을 발표해 주십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김지선 선임연구위원님, 실무전문가의 관점에서 토론해주실 이정아 법무부 형사 법제과 검사님, 김용중 경기남부경찰청 자치경찰부장님, 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님,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님, 배석준 법률신문 편집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과 전문가들의 지식을 결합하여 정확한 진단과 실효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입니다.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를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최근 신림역, 서현역 등 이상동기 등 흉악 범죄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분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애써주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님과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윤정숙 선임연구위원님과 토론에 참여해주신 관련 부처 공무원분들과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고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강도 높은 대응과 함께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와 여당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비롯해 흉악범 전담 교소도 설립, 흉악범에 대한 구형량 추가 상향, 사법 입원제 도입, 공중 협박죄 도입, 다중밀집 장소에 대한 특별치안활동 강화 등 사법적 정책적 조치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적으로 이상동기 범죄 원인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위 은둔형 외톨이와 불안한 대인관계에서 오는 사회적 불만이 이상동기 범죄로 이어진다는 많은 전문가분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사전적 예방 조치가 가능하도록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정부와 여당,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분들께서 한자리에 모여 현재의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단기 및 장기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긴급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 국민께서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의 책무를 다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통영·고성 출신 정점식 국회의원 인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님과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님을 비롯하여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합니다. 국민 불안은 물론 지역 상권 경제에까지 큰 피해를 끼치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신상공개 및 처벌강화, 피해자 보호 등 이상동기 범죄 근절 대책 논의를 위해 법무부, 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와 학계 및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자리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보다 내실 있는 대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공개되는 가해자들의 사진이 현재의 모습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구금과정에서 촬영된 범죄자 얼굴 사진인 일명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머그샷 공개는 최근 4년간 단 1건에 불과한데,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고자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6.20 발의)」을 대표발의하였고,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토론회에서 관련 제도의 미흡한 점은 무엇이 있는지, 해외사례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랍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오늘 도출된 내용들을 토대로 관련 입법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를 뜻깊게 생각하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발표 |

이상동기범죄 특성 및 대응방안

윤정숙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상동기 범죄 특성 및 대응방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정숙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

이상동기 범죄 용어 및 개념

- 문지마범죄: 2000년 4월 24일 한국일보의 “‘문지마 살인’ 광풍” 기사제목으로 생성된 용어
- 이상동기범죄 vs. 무동기범죄 vs. 무차별(무작위)범죄 vs. 증오범죄
 - cf. 해외 유사 범죄: mass murder(대량살인 중 정신증형이나 무차별 분노형, Marzuk 등, 1992), public shootings(공공장소 총기난사 중 정신증형이나 정신병질형, Langman, 2009), nonspecific motive murder(불특정 동기살인, FBI 범죄분류 매뉴얼 상 개인적 동기 9개 유형 중 특정 동기 없는 유형, Douglas 등, 2006), 일본 토리마(거리의 악마) 범죄(주로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대량 살인행위를 위주로 집계)
- 이상동기범죄의 개념 정의
 - 1) 불특정인 대상
 - 2) 폭력 행사(범죄 목적 뚜렷한 성폭력, 절도, 테러 등 제외)
 - 3) 불분명한 동기(동기가 없거나 뚜렷하지 않음, 피해자 혹은 합리적 사고를 가진 자의 입장에서 이해 하기 힘들)

이상동기 범죄 주요 사례

여의도 칼부림 사건(2012년)

- 30세 남성 가해자, 전 직장동료 칼부림 후 지나가는 행인 공격
-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경험, 직장생활 부적응, 신용 불량으로 인한 경제적 궁핍, 우울감 지속 경험
- 직장동료들의 회고로는, 평소 친한 사람들에게 서운함을 느끼면 급격하게 평가절하시키고 증오 혹은 분노의 감정을 품는 경향

강남역 노래방 살인사건(2016년)

- 34세 남성 가해자, 노래방 화장실에서 여성 살해
- 조현병 환자, 여성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피해망상: '지하철에서 어깨를 치고 가는데 보니까 다 여성이었다', '지하철에서 여성들이 나를 지각하게 하려고 일부러 천천히 걸으며 앞을 가로 막는다', '여성들이 담배 공초를 일부러 나에게 던진다 →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느니 내가 먼저 죽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

진주 안인득 방화 살인사건(2019)

- 42세 남성 가해자, 조현병 환자, 폭력 전과(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있음
- 평소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욕설, 오물 투척 등의 공격행위 다수,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경찰 별다른 조치 없었음
- 가족(친형)이 강제입원시키려 하였으나 본인 거부로 이뤄지지 않음(이후 사법입원제도 논의 접화)

이상동기 범죄 해외 사례

일본:
토리마범죄(거리의 악마)



• 일본 카나가와 이바라키현 연속살상 사건: 망상으로 인한 살상

1) 범행 내용

2008년 3월 카나가와 마사히로(남, 24세)가 철도역에서 칼로 사람들을 연달아 찔러, 총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 경찰관 8명을 연달아 찌르고 인근 파출소로 가서 "제가 범인입니다." 라고 말한 뒤 달려온 경찰관에 의해 체포

2) 가해자 특성 및 심리상태

-범행 당시 무직,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도, 취직도 하지 않고, 다만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만화책을 읽으며 지냄, 가족들과의 관계도 피하면서 식사도 혼자 함. 그의 휴대전화에는 "나는 신이다.", "내가 하는 것이 전부다." 라고 적혀 있었으며, 그의 방에는 "死" 라는 글자와 함께 의미 불명의 기호 같은 것이 온 벽에 그려져 있었다고 함.

-범행동기" 마법을 사용할 수 없는 이 세계에서 살 수 없어 살인을 저지르고 사형을 당하고 싶었다"고 진술.

이상동기 범죄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령	인원(%)
10대	2(4.2)
20대	9(18.8)
30대	15(31.3)
40대	16(33.3)
50대	5(10.4)
60대	1(2.1)
계	48(100.0)

성별	인원(%)
남	47(97.9)
여	1(2.1)
계	48(100.0)

*주: 폭행/상해죄의 범죄자 주된 연령층이 50대(21.6%), 40대(20.9%)이고, 20대와 30대의 비율을 합친 수치가 36.6%인 것(대검찰청 범죄분석 2021)에 비하면, 20대와 30대의 비율이 50.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출처: 윤정숙, 박지선 외(2014), 문지마범죄자의 특성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월평균소득	인원(%)
없음	35(72.9)
100만원 미만	6(12.5)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6(12.5)
알수없음	1(2.1)
계	48(100.0)

이상동기 범죄자 형량 및 전과력

형량	빈도(%)
1년이하	7(12.1)
1년이상~3년이하	22(37.9)
3년이상~5년이하	14(24.1)
5년이상~7년이하	3(5.2)
7년이상	12(20.6)
계	58(100.0)

*출처: 윤정숙, 박은영 외(2017), 동기없는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개입방안 연구

전과수	인원(%)
없음	12(25.0)
1-5건	18(37.5)
6-10건	8(16.7)
11-15건	5(10.4)
16건 이상	5(10.4)
계	48(100.0)

과거 문지마범죄 전력	인원(%)
없음	7(20.0)
1-2건	7(20.0)
3-5건	4(11.5)
6-9건	0(0.0)
10건 이상	4(11.5)
알수없음	13(37.1)
계	35(100.0)

*출처: 윤정숙, 박지선 외(2014), 문지마범죄자의 특성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이상동기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폭력범죄 재범위험성평가(KORAS-R)결과

등급분류	구분		비율 (100.0)
	점수	빈도 N	
저위험군 (6점 이하)	4	1	(1.7)
	5	1	(1.7)
	합계	2	(3.3)
중위험군 (7점~11점)	7	1	(1.7)
	8	1	(1.7)
	9	1	(1.7)
	10	1	(1.7)
	11	4	(6.7)
	합계	8	(13.3)
고위험군 (12점 이상)	12	2	(3.3)
	13	4	(6.7)
	14	5	(8.3)
	15	6	(10.0)
	16	5	(8.3)
	17	5	(8.3)
	18	9	(15.0)
	19	3	(5.0)
	20	4	(6.7)
	21	3	(5.0)
	22	2	(3.3)
	23	1	(1.7)
24	1	(1.7)	
합계	50	(83.3)	

이상동기 범죄 고위험군(K-RCC) 분류 결과

구분	빈도(명)		비율(%) (100.0)
	N		
총 점수	7	1	(1.7)
	9	3	(5.0)
	10	4	(6.7)
	11	2	(3.3)
	12	4	(6.7)
	13	5	(8.3)
	14	5	(8.3)
	15	6	(10.0)
	16	6	(10.0)
	17	5	(8.3)
	18	4	(6.7)
	19	6	(10.0)
	20	1	(1.7)
	21	2	(3.3)
	22	3	(5.0)
	23	2	(3.3)
	24	1	(1.7)
	평균(표준편차)	15.57(4.02)	

*음영부분은 고위험군

*출처: 윤정숙, 박은영 외(2017), 동기없는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개입방안 연구

이상동기 범죄자 범행동기 및 일과

범행동기(복수응답)	인원(%)
사회 불만	6(8.8)
처지 비관	5(7.4)
상대방의 의도 오해석	6(8.8)
분풀이, 스트레스 해소	16(23.5)
환각, 망상	18(26.5)
재미, 자기과시, 이유없음	17(25.0)
계	68(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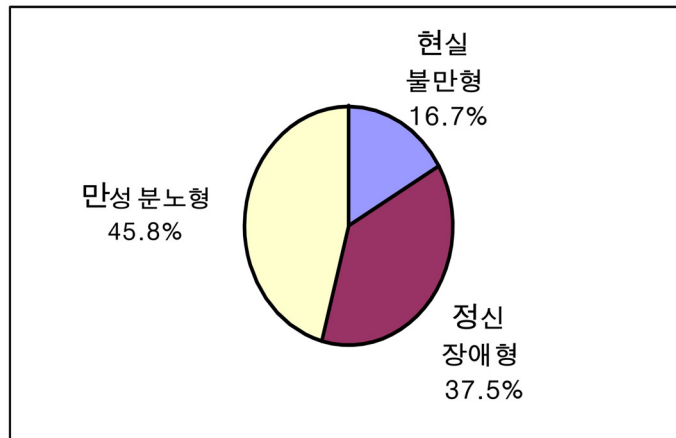
*백분율은 사례수 기준

하루일과(복수응답)	인원(%)	계
규칙적	4(8.3)	48(100.0)
친구들과 쏘다님	11(22.9)	48(100.0)
혼자서 쏘다님	26(54.2)	48(100.0)
집에서 머뭄(TV 시청, 잠)	14(29.2)	48(100.0)
게임 및 도박	8(16.7)	48(100.0)
술, 마약 탐닉	25(52.1)	48(100.0)
기타	1(2.1)	48(100.0)
알수없음	2(4.2)	48(100.0)

*백분율은 응답자수 기준

*출처: 윤정숙, 박지선 외(2014), 문지마범죄자의 특성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이상동기 범죄자 범죄유형



*출처: 윤정숙, 박지선 외(2014), 문지마범죄자의 특성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이상동기 범죄자 세부 유형별 범죄 유형 및 전과이력

단위: 명(%)

구분	범죄 유형			(df) χ ²
	현실 불만형	정신 장애형	만성 분노형	
살인	0(0.0)	2(11.1)	0(0.0)	(df=14) 29.318**
살인미수	4(50.0)	7(38.9)	1(4.5)	
살인예비, 음모	2(25.0)	0(0.0)	0(0.0)	
상해	2(25.0)	5(27.8)	16(72.7)	
폭행	0(0.0)	1(5.6)	2(9.1)	
방화	0(0.0)	1(5.6)	0(0.0)	
협박, 공갈	0(0.0)	1(5.6)	1(4.5)	
재물손괴	0(0.0)	1(5.6)	2(9.1)	
전체	8(100.0)	18(100.0)	22(100.0)	

** p < .01

단위: 명(%)

구분		범죄 유형			(df) χ ²
		현실 불만형	정신 장애형	만성 분노형	
폭력 상해	전과 없음	6(75.0)	6(33.3)	3(13.6)	(df=2) 10.340**
	전과 있음	2(25.0)	12(66.7)	19(86.4)	
전체		8(100.0)	18(100.0)	22(100.0)	

**p < .01

*출처: 윤정숙, 박지선 외(2014), 문지마범죄자의 특성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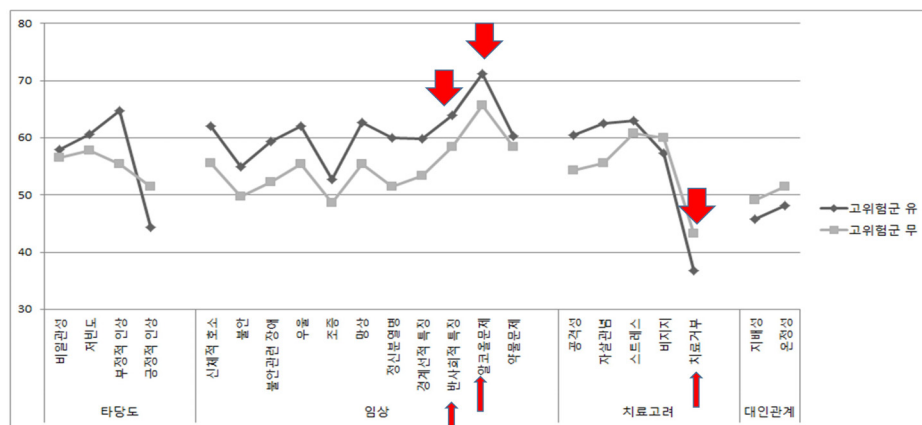
이상동기 범죄자 정신질환

구분	범죄 유형			단위: 명(%) (df) x2
	현실 불만형	정신 장애형	만성 분노형	
정신분열증	-	10(62.5)	1(12.5)	(df=22) 34.602*
망상 장애	-	1(6.2)	-	
알콜 중독	-	1(6.2)	2(25.0)	
약물 중독	-	1(6.2)	-	
우울증	2(50.0)	-	2(25.0)	
불안 장애	-	-	1(12.5)	
적응 장애	1(25.0)	-	-	
회피성 인격장애	1(25.0)	-	-	
반사회적 인격장애	-	-	1(12.5)	
양극성 장애	-	1(6.2)	1(12.5)	
기타 정신증 장애	-	1(6.2)	-	
미상	-	1(6.2)	-	
전체	4(100.0)	16(100.0)	8(100.0)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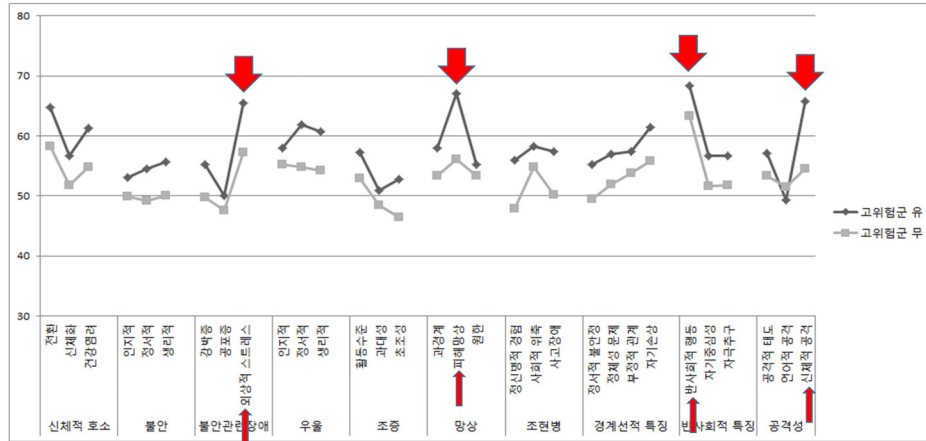
*출처: 윤정숙, 박지선 외(2014), 물자마범죄자의 특성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주: 수사재판기록 상으로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는 경우만 포함

이상동기 범죄자 심리적 특성(PAI 척도, Morey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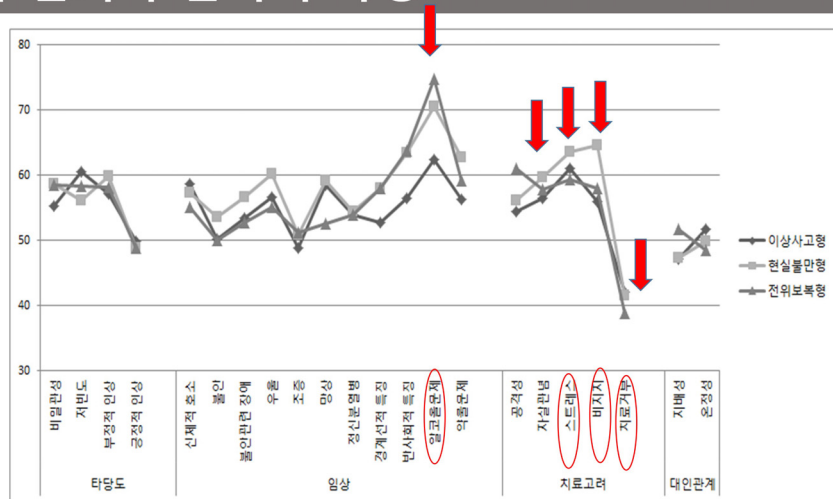
*출처: 윤정숙, 박은영 외(2017), 동기없는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개입방안 연구

이상동기 범죄자 심리적 특성



*출처: 윤정숙, 박은영 외(2017), 동기없는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개입방안 연구

이상동기 범죄자 심리적 특성



*출처: 윤정숙, 박은영 외(2017), 동기없는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개입방안 연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대책

1. 현실불만, 처지비관형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정책

-극단적 회피나 불만 성향의 대인관계 기능을 안정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

cf.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대책 참고: 일본은 지자체 단위로 신변에 대한 서비스, out-reach형 방문지원, 가족이 상담과 진단을 받기를 권할 수 있는 상담 제공(2013년부터 히키코모리 대책 추진 사업 시행)

-청소년 사회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1388청소년 전화상담, 지자체 청년 사회안전망(서울시, 2023 신설),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정신보건 기관→ 제 1상담창구 역할 수행→ 특히, 폭력 고위험(high risk)군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 조기 발굴 필요

cf. 특히 현실불만형 20대와 30대가 많고, 처지 비관과 높은 우울감의 배경에 구직실패, 경제적 취약성, 가족과의 단절 문제 내재되어 있음, 20대 초기를 넘어서는 연령 대상의 청년층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진단 필요

-지역 전문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실무자 사례 관리 회의 필수 개최, 지자체 장이나 행정부서의 수장 등 지속적 관심 필요

cf. 해외: 고독 대책국(부서) 정부에 신설, 사회적 유대의 감소와 고립 증대는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 확산

-현실불만형은 타 유형에 비해 전과경력 적어 사회 재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음

이상동기 범죄 예방대책

2. 만성 분노형, 전과 경력자의 재범고위험군 관리

- 이상동기 범죄 출소자(대부분 폭력, 상해 범죄자) 중 고위험 범죄자 사회내 관리 체계 부재

cf. 성폭력 범죄자: 전자감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으로 출소 후 관리 가능

- 재범 고위험자의 경찰 순찰활동 형식적 수준에 그침

- 관계기관(예: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경찰)간의 연계 부족, 독립적 운영, 정보공유기능 극히 미흡

cf. 교정기관과 보호관찰소 혹은 교정기관과 경찰 간, 재범 고위험자 관련하여 어떠한 정보가 공유되고 치안에 활용되는지 알 수 없음

- 형사사법기관 간 사용하는 공통 시스템에서 이러한 정보가 공유되고 관리되어 고위험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단절 없는 연속된 처우와 관리 필요

cf. 영국의 MAPPA(다기관 협력 공공보호방안) 참고 필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책

▪ 다기관 협력방안 해외 사례: MAPPA(영국)

- 2000년 형사사법 및 법원 업무법(Criminal Justice and Court Services Act)내에 다기관협력 공공보호방안(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 MAPPA)을 마련하여 각 행정구역내에서 보호관찰소, 경찰, 교도소가 이를 관리하는 주요 기관이 되도록 설정. 2003년에는 동 법내에 정식 형사사법 시스템의 일부가 아닌 의료 서비스 및 기타 기관에도 MAPPA의 협력에 대한 의무를 부과.

레벨	내용
제 1 등급: 기본 위험 관리	-범죄자의 위험성이 다른 기관의 참여 없이 한 기관에 의해 관리 -대개 위험성 평가 결과 위험성 등급이 저 혹은 중에 해당 -MAPPA의 상당수가 제 1 등급에서 관리
제 2 등급: 지역내 기관간 위험 관리	-한 기관 이상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지만, 위험성의 수준이나 위험성 관리안의 복잡성이 제 3 등급 정도의 수준은 요하지 않음
제 3 등급: 다기관협력 공공보호방안	-위험성 평가 결과 위험성이 높거나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위험요인들이 관리의 복잡성과 집중적인 자원의 필요로 인해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리되어야 함 -또는 위험성 결과 고위험군은 아니더라도, 사건이 일반 대중과 미디어의 높은 관심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특별히 중요하여 일반인에게 형사사법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상동기 범죄 예방대책

- MAPPA의 의무는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출소자 위험 관리
 - 주로 폭력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교도소 출소 이후의 관리를 담당하지만, 정신병원이나 정신보건법상의 강제 입원 명령의 대상자의 출원 혹은 정신이상자의 지역사회내 관리 또한 담당
- MAPPA에 의해 관리받는 범죄자들은 보호관찰기관과 교정시설에서 사용되는 위험성 평가 도구에 의해 위험성이 평가. MAPPA의 약 71%가 제 1등급에서 관리되며, 26%는 제 2등급에서, 약 3%는 제 3등급에서 관리
 - 책임기관: 경찰, 교도소, 보호관찰관
 - 협력기관: 지방사회복지국, 공립의료센터, 취업센터, 소년범죄팀, 지방주택국, 교육국, 전자감시센터 등
- 정보공유: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대상자 정보 입력, 보호관찰소의 사례평가(OASys, Offender Assessment System)결과 경찰 DB에 등록
 - 4개월마다 사례 관리 회의(위험성 변화에 따라 레벨 조정 가능)
 - 레벨 3의 경우 사례관리 회의 더 자주(4~6주마다)
- MAPPA 전후 재범률 비교 → 시행 후 재범률 감소

*참고: Reoffending Analysis of MAPPA Eligible Offenders Stephanie Bryant, Mark Peck, and Jorgen Lovbakke,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Justice Analytical Series, 2015

이상동기 범죄 예방대책

3. 정신장애형 이상 동기 범죄자 대책

- 현행 정신보건법, 증가하고 있는 무의탁 정신질환자 발굴 및 치료 해결 못함
- 경찰 응급입원(72시간 한정)→ 장기간의 정신의료 필요한 경우 부적합, 전문역량부족, 민원에 대한 염려로 이송 판단 소극적
 - cf. 대만 정신보건법: 경찰과 소방은 자타해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 즉시 근처의 의료기관에 호송하여 치료를 받게 해야한다(강제적 규정) vs. 국내 정신보건법: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임의적 규정)
- 행정입원→ 인권침해의 위험성 염려, 소극적 실시, 병상 부족의 문제 심하고 병원을 '설득'하여야 하는 문제
 - cf. 해외: 지자체의 권한을 이양받은 의사가 결정, 지자체 책임하에 응급공공병상 운영
- 보호의무자 입원→ 가족과 환자와의 협조문제, 본인동의 없으면 서비스 개시 안됨, 정신보건전문의 선정 문제 등 장벽 높음
 - cf. 해외: 미국, 영국, 호주 경찰에 연락, 경찰은 본인 또는 연계출동 의무, 준사법 또는 사법기관 또는 지자체가 정신건강진단평가를 시행할 권한이 있음
- 비자발적 강제입원에 대한 제도적 공백 메꿀 필요→ 사법 입원 제도 논의
 - cf. 사법입원제도: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실시, 판사의 전문성 부족 문제 해결할 양형조사관 혹은 판결전조사관의 전문성 매우 중요, 판결전조사사 정신감정, 심리평가, 사회복지적 수요 파악 등을 위해 다학제적 접근 필요
- 기타, 범법정신장애자를 위한 치료감호소의 운영 방식 개선, 외래치료명령 활성화, 무의탁 퇴소자 관리 강화(중간처우시설)

감사합니다
yoonjsk@kic.re.kr

| 토론 1 |

이상동기범죄 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 방안

이정아 검사
(법무부 형사법제과)



※ 금일 발표하는 내용은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실무 담당자의 의견임을 양해바랍니다.

이상동기범죄 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 방안

이정아 검사 (법무부 형사법제과)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형사법제과 이정아 검사입니다.

먼저 최근 증가하는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위하여 긴급토론회를 주최해주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상에 살인 등 범죄행위를 예고하는 글이 다수 게시되고 실제로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일련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처벌,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관리 등 기존의 대응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사법입원제’,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등 신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의 추진 배경과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

현행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한 국가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사형을 집행한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지난 10년간(2013~2022) 약 119명이 가석방 되었습니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즉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와 함께 우리사회에서 장기간 논의, 검토되어 온 방안으로 2004년 17대 국회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171129, 유인태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이래 지속적으로 같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고, 2009년 18대 국회에서 사형제를 존치하면서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186664, 김영환의원 대표발의), 2023년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2123539,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123727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계류 중으로 충분한 입법적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두 차례에 걸쳐 절대적 종신형 보다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 중한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1996년, 2010년)을 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05년 이미 사형폐지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2023도2043)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형 중 다른 수형자를 살해한 사안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하여, 사형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현 상황에서 사형이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으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있으나 법에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처벌인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시함으로써, 흉악범죄자에 대하여 영구적인 격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로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외에 다수의 하급심 판례에서, 살인 등 흉악범죄자에 대하여 무기형을 선고하면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현행법상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 ▶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과 다를 바 없어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일부 학계의 비판을 무릅쓰고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형은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되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세 모녀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노2032)
- ▶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피고인은 20년 후에는 가석방될 기회를 얻어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들은 생명을 잃고 이 세상에서 더는 살아가지 못하는 데 반해, 피고인은 버젓이 다시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특히 피해자들 유족이나 일반 사회인에게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일 여지가 많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지만, 이를 우리의 형사법 체계에서는 채택하지 않았다.(대전고법 2021노58)

국민들의 여론 역시 최근 조사 결과(8.21.~22., 서울경제 의뢰, 한국갤럽 조사, 1004명)에 따르면, 흉악 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데 찬성의견은 92%이고, 반대의견은 6.2%에 그쳤습니다. 특히 지역과 성별, 연령, 직업, 이념을 떠나 모든 범주에서 80% 이상입니다.

해외 입법례 역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50개 주 중 알래스카를 제외한 49개 주에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그 중 27개 주에서는 사형제도 병존).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네덜란드 등은 절대적 종신형만 존재하고, 프랑스, 영국, 헝가리, 불가리아 등은 상대적 종신형과 절대적 종신형이 모두 존재합니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의 범죄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석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교정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형벌은 범죄예방 목적 외에 응보의 목적도 있으므로 중한 범죄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의 위하력에는 일반 예방 효과도 있지만 교화가능성이 낮은 수형자 개인에 대한 범죄 억지력(무능력화)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20대에 동거녀를 살해하여 무기형을 선고받고 20년으로 감형되어 1999년 출소한 자가 6개월 만에 다시 이복형수와 그 노모를 살해하여 사형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만약 당시 무기수가 출소하지 않았다면 추가 피해자 2명이 살해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보더라도 명확합니다.

이에 법무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의 사형제도와 별도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법원은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정부안은 입법예고(8. 14.~9. 25.)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중에 있습니다. 관련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안이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되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공중협박죄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살인예고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상 협박죄, 살인예비·음모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처벌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전혀 특정되지 않거나, 범행도구의 구입, 범행계획 수립 등 예비·음모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없는 경우 또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형법」의 적용이 곤란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반복적인 행위’로 불안감을 조성한 경우에 한정되고, 「경범죄 처벌법」 상 거짓신고는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 처벌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과거 협박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추상적 살인예고 등 공중협박 행위의 경우 처벌에 공백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관련 판례 〉

- ▶ (사실관계) 라이브스코어 앱 사이트에 “오늘 밤 8시 기장에서 칼로 30명 죽이고, 송정해수욕장에서 50명 죽일꺼다.”는 글 포함 총 13회에 걸쳐 글과 사진 반복적으로 게시(울산지법 2014고단 3685)
 ⇒ 정보통신망법위반죄(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를 피해자로 한 공포심 등 유발 문언의 반복적 게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죄 (**협박죄로 의율 X**)
- ▶ (사실관계) ○○예고 전경 사진과 위 학교 여학생들의 사진과 함께 “자동차 끌고 가서 ○○예고 정문에서 기다리다 마음에 드는 아이 한 명 강제로 트렁크에 태워서 경기도 구리시에 살고 있는 창고에 끌고 가서 교복 입힌 채로 평소에 꿈이었던 ○○예고 학생을 인정사정 안 봐주고 할거다, 지금 소주 두 병 사서 빌린 차에서 마시면서 대기 중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대법원 2017도 12095)
 ⇒ 협박죄(피해자 학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 업무방해(피해자 학교) 유죄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다수 주에서는 「형법」 상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행위를 ‘테러협박죄’로 처벌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공공질서에 대한 죄’ 항목에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상당한 방법으로, 열거한 범죄행위(소요, 강간, 살인, 상해, 인신매매, 강도, 방화 등)를 범할 것이라고 위협하거나 임박한 것처럼 기망한 경우’를 ‘범죄위협에 의한 공공평온교란죄’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공공의 질서에 관한 죄’ 항목에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협을 위협하거나 가장하여 대중을 협박한 경우’를 ‘일반대중에 대한 공포심 또는 불안감 조성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를 가장하여 공중을 협박한 행위를 사회적 법익의 죄인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의 장에 신설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하였습니다(2124038,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3.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현행법상 도검의 제조·판매·소지·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로 도검을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허가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 또는 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 15cm 미만이라 할지라

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직무상 도검을 소지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용도 외 도검을 지니거나 운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뿐 별도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총포화약법」은 그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허가받은 도검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소지 등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의 경우, 제7조(우범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법에 규정된 범죄’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대법원 2017도7687)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9월 「폭력행위처벌법」에 대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4헌바154)을 한 이후 야간 폭력범죄, 특수 폭력범죄(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상당부분 삭제되고 「형법」에 편입됨에 따라 현재 ‘이 법에 규정된 범죄’로 남아있는 죄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죄(제2조 제2항), 상해누범(제2조 제3항), 특수상해누범(제3조 제4항), 단체등의구성·활동죄(제4조 제1항), 단체등의살인죄(제4조 제2항 제1호), 단체등의상습특수상해죄(제4조 제2항 제2호) 등에 불과합니다. 즉 「형법」상 살인, 특수상해 등에 사용할 의도 아래 과도나 식칼을 소지하고 다니는 경우에는 우범자 조항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의 은닉휴대는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 조항의 대상범죄에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범죄를 추가하고 벌금형 부분을 상향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2116345,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다만 위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우범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부분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 그 휴대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고 흉기 등의 성질·모양·용도·휴대 경위·휴대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공용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의 뜻으로, 역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의 종류, 그 물건을 휴대한 이유, 휴대하게 된 경위, 휴대 전후의 정황 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누구든지 공공장소 또는 학교부지에서 도검류를 소지하면 처벌되고, 독일의 경우 고정식 칼날의 길이가 12cm 이상이면 용도를 불문하고 소지 및 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공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법에 규정된 무기를 휴대할 수 없으며 대중이 모일 수 있는

특정 공공도로 혹은 광장, 대중교통, 쇼핑센터, 청소년 기관 및 교육 기관에서는 4cm 이상의 고정될 수 있는 칼날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우범자) 조항을 개정하여 죄명을 ‘범죄공용우려 흉기 휴대 등죄’로 변경하고,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외에 살인, 상해, 폭행, 협박 등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대상범죄에 추가하고,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하는 내용의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였습니다(2124033,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현재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관련 개정안은 법사위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로, 각각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긴급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국회 논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토론 2 |

이상동기 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경기남부 특별치안활동」 추진 내용 및 향후 방안

김용종 자치경찰부장
(경기남부경찰청 경무관)



이상동기 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경기남부 특별치안활동」 추진 내용 및 향후 방안



경기남부경찰청

이상동기 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경기남부 특별치안활동」 추진

추진배경

N | 서현역 흥기난동

한겨레 PICK 7월 전 네이버뉴스
 '분당 흥기 난동' 최원종 차량에 치인 20대 여성 끝내 숨져
 분당 흥기 난동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세)이 풀린 지향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은 20대. 7씨는 지난 3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최원종이...
 분당 흥기 난동 뇌사 빠졌던 20대... 파이낸셜뉴스 PICK 7월 전 네이버뉴스
 분당 흥기난동 최원종 차량에 치인 20대... 채널A PICK 7월 전 네이버뉴스
 분당 흥기난동범 최원종 지에 치인... 파이낸셜뉴스 PICK 7월 전 네이버뉴스
 "20살 해맑던 외동딸" 목숨 잇어간 최원... 이데일리 PICK 6월 전 네이버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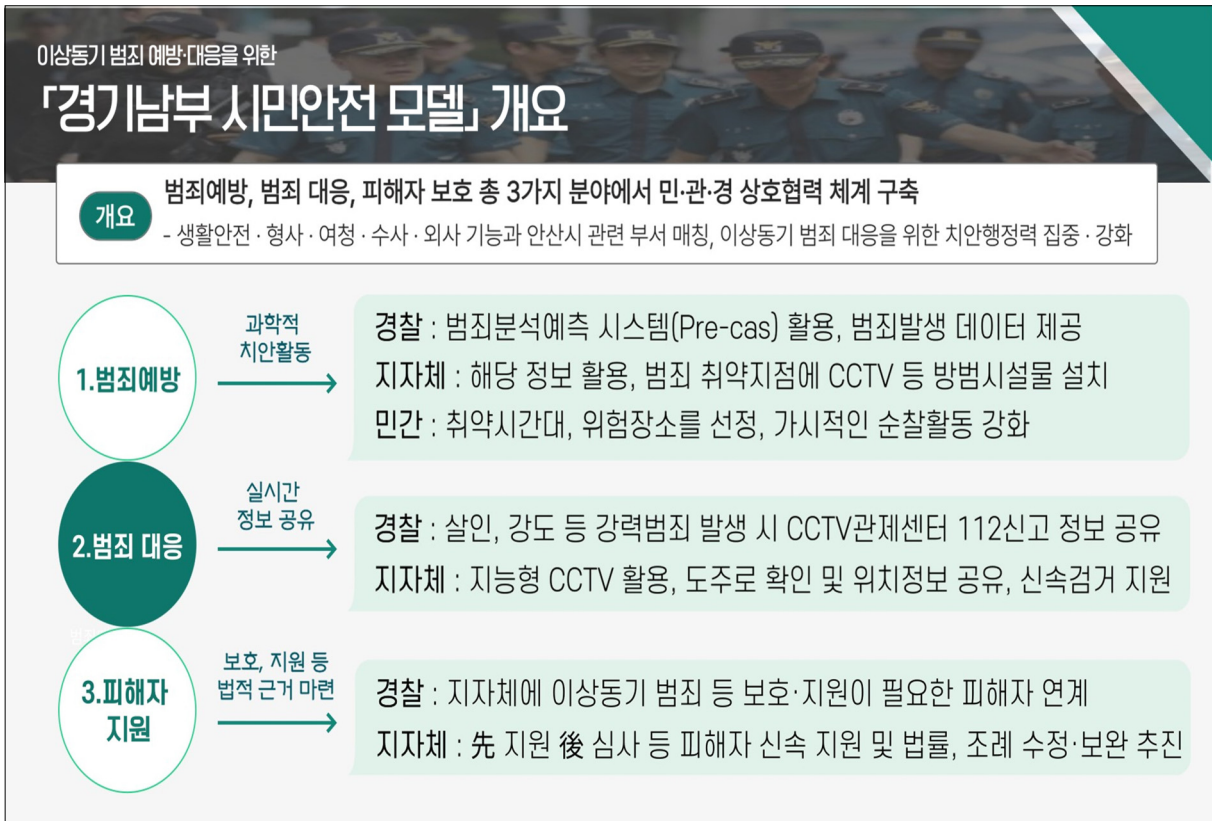
'23.08.03(목)
 분당 서현역 흥기난동
 (사망2명, 부상 12명)

특별치안활동 추진 TF

'23. 8. 4. - 9. 17.

구분	총계	지하철역	백화점	밀집장소 등	행사장	관광지
개소 수	30,352	12,234	4,726	12,398	310	684
배치인원	99,866	36,283	17,276	40,325	3,330	2,652

- 관내 다중밀집지역, 가용경력 집중배치
 - 경찰관(지역경찰·형사·경찰관기동대·교통경찰) 22,977개소, 55,623명 배치
-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 경비원과 협력치안활동 전개
 -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 7,375개소 44,243명 배치
-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확행
 - 정신질환 관련 112신고 1,735건 접수, 292건 응급입원 조치
- 살인예고 글 신속 수사 및 삭제·차단
 - 경기남부청 총 104건 접수⇒ 검거 64건(66명, 구속 6명)
 - SNS 등 살인 예고 관련 글 총 283건에 대해 삭제·차단 완료



이상동기 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경기남부 시민안전 모델」 단계별 추진 전략

01



시민안전모델 시범운영

전국 최초, 경찰-안산시 협업, 시민안전모델 출범

02



협력치안 표준화 모델 마련

성남·화성권 확대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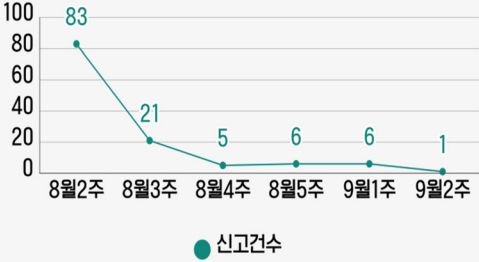
03



경기남부 전역 확대 시행 (9월말)

이상동기 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경기남부 특별치안활동」 범죄예방 효과 분석

살인예고글 신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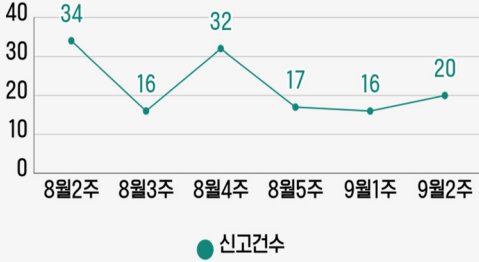


기간	신고건수
8월2주	83
8월3주	21
8월4주	5
8월5주	6
9월1주	6
9월2주	1

● 신고건수

살인예고글 신고는 특별치안활동 전개 후 급감하였고, 범죄발생 3주 경과후 1일 1건 이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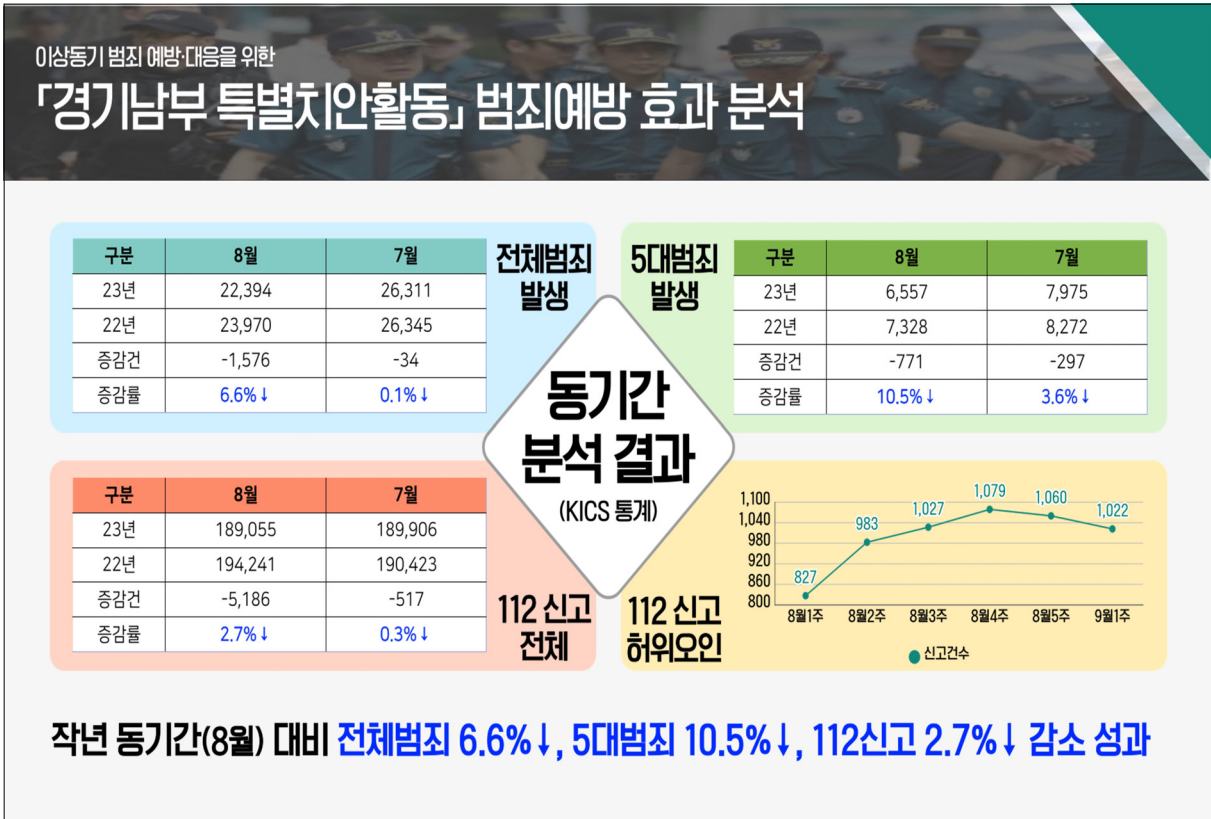
흥기 소지 배회 신고 추이



기간	신고건수
8월2주	34
8월3주	16
8월4주	32
8월5주	17
9월1주	16
9월2주	20

● 신고건수

흥기 소지 배회 신고는 8월에 증가하였다가, 8월 말부터 평소 수준으로 유지



| 토론 3 |

토론문

전명숙 정신건강정책과장
(보건복지부)



| 토론 4 |

무차별 범죄 억제를 위한 제언

이용혁 교수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무차별 범죄 억제를 위한 제언

이웅혁 교수 (건국대 경찰학과)

1. 범죄 정책 형성 및 개발에 범정부적 국가역량 모아야

- 우리 사회는 충격적인 범죄가 발생하면 흥미위주의 싸이코패스 점수 매기기 식으로만 과잉소비하고 사회 병리적 현상의 실태와 형사사법기관 및 관련 정부기관의 역할 개선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에는 무관심해 왔다. 즉, 사건 발생 직후에만 잠깐 관심을 보였을 뿐이고, 사건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공통 패턴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해결 노력은 부족했다.
- 미국의 경우는 사회에 위협이 되는 범죄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 위원회가 구성되어 원인진단과 이에 따른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정책 실무자 및 이론가가 다수 참여하여 마련했다. 예를 들어, 존슨 대통령(법집행과 형사정의위원회¹⁾), 닉슨 대통령(조직범죄 위원회²⁾), 카터 대통령(80년대 범죄대응위원회), 레이건 대통령(마약 정책위원회), 오바마 대통령(21세기 경찰위원회³⁾), 트럼프 대통령(마약남용 대응위원회)위원회에서 범죄 관련 문제의 면밀한 원인 분석 후 사회 안전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을 제시하고 제도화했다.
- 하지만 우리는 현재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 (신림역, 서현역 등의 흉기살해)’같은 사건이 몇 건이나 생기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 관련된 기초적 국가통계도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윤정숙 박사님의 발제문에 나타난 이상동기 범죄 특성은 약 10년 전의 적은 샘플 (n=48)을 활용한 간단한 빈도 분석과 교차검증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실증 데이터를 사용하여 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향후 범정부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체계적 데이터를 망라하여 정교한 원인 진단을 하고 이에 근거한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2. 사건 발생이전의 선제적 예방에 정책 초점을 맞추어야

- 현재 시민들이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국가가 사전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여 무차별 범죄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 국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우리나라도 향후 범정부

1) 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2) President's Commission on Organized Crime

3) President's Task Force on 21st Century Policing

차원의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원인 진단이 있어야 그에 따른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단 윤정숙 박사님의 발제 내용 중의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의 대부분은 30-40 대의 월평균 소득이 없는 남성 중 전과경력이 많고, 혼자 시간을 보내며, 분풀이 심리기재가 강하거나 망상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약 2달간 발생한 흉기난동 및 예고 관련 피의자 125명에 대한 전수조사의 빈도분석 결과⁴⁾도 비슷해 보였다. 주로 20-30대 젊은층이 분노 표출의 동기를 갖고 흉기를 들었던 것 같다.

- 그렇다면 외관상 ‘이상’ 동기 또는 ‘묻지마’ 범죄로만 막연히 치부하기 보다는 일정한 사회적 패턴이 있다는 전제에서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고립되어 있거나, 범행경력이 있거나, 또는 망상적 사고가 있는 젊은 층을 찾아내어, 이들의 일정한 성취실패로 인한 불쾌감정의 축적을 제거하고 그들의 공격적 태도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과 시민의 쌍방향적 대면접촉이 필수적이다. 경찰은 112신고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활동에서 탈피하여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사건 이면의 사회적 문제를 분석한 후, 필요한 해결책을 지방 및 중앙정부 기관과 함께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무차별범죄 예방과 관련하여 경찰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고립자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또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프로그램’에 연계할 수도, 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센터’와의 협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경찰은 선진국처럼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지향적 경찰활동(problem-oriented-policing)’으로 탈바꿈이 필요하며,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치안을 지향해야한다. 일정한 주제와 콘텐츠 없이 단순히 경찰순찰 인력을 길거리에만 늘려 놓는 접근으로는 범죄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음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 법무부의 패러다임 전환도 요구된다. 정해진 복역기간에만 수형자를 가두어두기만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수형자의 출소 후 재범 방지가 교정기관의 중요 목표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교정철학과 인력 충원을 포함한 새 조직 설계가 필요하며, 작은 규모의 교정시설의 다수 신설을 통해 전문화된 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해야한다. 얼마 전 당정에서 내놓은 가석방 없는 종신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삼진아웃제의 병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대량 구금을 상정한 교정시설의 신규 건설을 준비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가 현재 주무 기관으로서 사법입원제 도입을 법무부와 협의 중 인듯하다. 그렇다면 법원이 매년 심사하게 될 비자의 입원(강제 입원) 건수는 약 10만 건 정도로 추산되므로, 사법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폭적 판사 증원 및 관련 시설 또한 미리 확충해 놓아야 한다.
- 국가의 정교한 노력이 있을수록 국민은 안전해질 것이다.

4)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62822&ref=A> 흉기난동·범행예고, 전수분석…공통점은 ‘분노, 청년, 주말’

| 토론 5 |

이상동기 범죄를 둘러싼 보도와 앞으로의 방향

배석준 편집국장
(법률신문)



이상동기 범죄를 둘러싼 보도와 앞으로의 방향

배석준 편집국장 (법률신문사)

I.

최근 신림동 살인사건 이후 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남. 언론 역시 이때를 기준으로 과거 사례와 최근 이어진 유사 범죄 행태를 집중 보도하기 시작.

II.

- 언론은 다양한 이상동기 범죄 현황을 조사하고 그 실태를 객관적으로 보도할 필요 있음.
- 그 과정에서 이상동기를 저지른 가해자가 누구인지, 어떤 배경을 지녔는지 등 개인정보에 속하는 영역까지도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가해자의 나이, 성별, 배경 등 보도 필요성은 그와 같은 사례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가해자의 유형화를 하는데 필요함. 그래서 특정한 분류 범위 내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면 그 분류 범위 내에 포함된 자들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음.
-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문지마 범죄가 최근들어 다수 생겨나는 배경을 조사하고 피해사례를 언론이 집중 보도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 신상정보를 범죄 발생시 즉각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미국,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어떻게 보도하고 사회적으로 다루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한국만 개인정보, 인권 등 보호를 위해 해외 사례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는 없는 일임,
- 인권 보호도 범죄 가해자 등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 인권 보호'로 전환을 해야하는 시점으로 보임. 피의자 인권과 피해자 인권이 상충하는 지점이 발생할 때는 피해자 인권 보호에 더 주안점을 두는 방향으로 바뀌나가야 하는 시점임.
- 물론 현행법에 어긋나는 지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 역시 언론 등에서 문제 의식을 갖고 기획 기사로 보도해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데 도움을 줘야 할 필요가 있음.
- 법조 영역을 취재하는 기자들에 대한 충실한 설명, 법조 유관단체에서 각종 세미나 개최와 해당 내용 보도 등으로 법적 문제의식을 세상에 알리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

III.

- 다양한 사례를 종합해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영역이 분류되면 해법 모색이 가능함
- 사회적으로 낙오됐다고 볼 수 있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에 대한 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보도하고 한국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과거에 파산은 범죄였거나 형사처벌 대상이었지만 경제적 파산자로 인해 사회 전체가 어려워지고 자살이나 범죄 등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파산자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만들어졌음. 개인 채무를 탕감하는게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를 안전하게 하고 보호하게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임.
- 마찬가지로 이상동기 범죄 역시 그 배경이 조사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다면 사회적으로 낙오된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는 초석을 쌓을 수 있게 됨.

